

화물배상책임보험안내

Presented by Federal Insurance Company

1. 화물배상책임보험이란?

화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취급업자나 운송주선업자 등이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에게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2. 의무가입 근거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유통촉진법 제 8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 조(별표 1) 에 의거 보상한도액 1 억 이상의 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며, 미가입시 영업허가가 취소됩니다.



3. 보증보험과의 차이점

구분	보증보험	화물배상책임보험
담보내용	인허가조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피해자가 보증보험사에 청구함	화물에 대한 파괴, 손상, 운송지연으로 인한 주선업자의 배상책임 및 소송비용, 손해조사비를 보상함
구 상	보증보험사는 보증인이나 주선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손해보험사는 주선업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구상권을 갖음
보증인	보증인 4명 필요	보증인 필요 없음

4. 보험의 가입대상

화물운송업자, 항공 및 해상운송중개인, 수탁자, 집배업자, 통관업자, 복합운송업자, 컨테이너취급자, 세관중개인, 포장업자, 선적업자, 운송중개업자, 창고업자, 부두관리인 등 화물운송에 관련된 모든 사업자들로서 각 사업자의 경영안정화 수단의 일환으로서 합리적인 위험관리 Program 을 제공합니다.

5. 보상하는 손해

SEC I - 화물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은 화물의 파손, 손괴, 운송지연 등으로 발생한 제 3 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배상 청구의 해결이나 방어를 필요한 법률 비용을 포함하여 보상 가능한 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또는 그 결과로 피보험자에 의해 발생한 필수적이고 납득할 만한 모든 추가 비용
- 해난 구조 또는 공동해손의 적하분담, 책임액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SEC II - 전문직업 배상책임

- 화물의 배달 착오, 부보실패, 특정지시사항의 이행 실패, 잘못된 협의 또는 사무 착오에 국한되지 않고 피보험자의 계약 의무 실행중에 생긴 부주의,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보험기간중 최초로 제기된 Claim 에 대한 제 3 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전임자에 의해 고용된 사람 (동업자, 소유권이 있는 임원 제외)의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부작위 및 이와 같은 원인으로 보험기간중 최초로 제기된 의무 위반에 대한 Claim 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6. 배상책임의 범위

주요 B/L 상의 배상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	B/L	KIFFA B/L	FIATA B/L	IATA B/L
배상금액 및 책임한도		중량단위 방식 1 Kg 당 2SDR	선적단위/중량병용방식 선적단위 667SDR 이나 1Kg 당 2SDR 중에서 높은 금액	중량단위 방식 1Kg 당 25 금프랑 (약 US\$20)
		복합운송에 해상운송 미포함시 1 Kg 당 8.4SDR	좌동	-
		물품인수전 종가통보시 신고가액이 보상한도액	좌동	좌동
		미국해상물품운송업이 적용되는 경우 포장당 US\$500 한도	좌동	-

7.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통면책사항

- 피보험자의 지불 불능, 즉시 지불 불가 또는 회수 불가능으로 기인된 배상 청구나 손해(피보험자의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지불 또는 회수하기를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됨).
- 피보험자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청구.
- 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소유권이 있는 임원의 부정, 사기 또는 범죄 행위나 부작위에 기인한 배상 책임 또는 비용.
- 타보험증권이나 증명서로부터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이나 비용
- 전쟁, 침략, 적군의 행동, 적대 행위 (전쟁 선포 여부에 관계없이), 내전, 반역, 혁명, 전복, 군사 또는 찬탈한 무력, 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한 몰수·국유화·징발·재산의 파괴·손상으로 발생하거나, 이러한 행위의 영향으로 직·간접으로 발생한 손해, 손상
- 다음 i), ii)와 같은 원인으로 직·간접으로 발생한 손해
 - a) 재산에 대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비용 또는 간접 손해
 - b) 이들의 특성에 의한 모든 법률상 배상책임
 - i)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연소에 의한 핵폐기물에서 나온 방사능에 의한 이온 방사 또는 오염
 - ii) 폭발성 핵부품이나 핵물질의 방사성, 독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위험한 재물
- 음속 또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나 비행 기구의 파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 피보험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징벌적 또는 가중된 손상.

SEC 1 - 화물배상책임 면책조항

-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하에 있거나 운송. 보관 계약상 피보험자가 책임 있는 화물에 대한 손해, 손상, 운송 지연으로 발생한 배상청구를 제외한 제 3 자에 의한 배상청구.
- 환율 변동에 기인한 배상청구.
- SECTION 2 에서 담보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아니한다

SEC II - 전문직업 배상책임 면책조항

- Section 1 에서 보상 가능한 배상청구

8. 피해자의 주요 의무

-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배상청구에 대한 지급이나 손해에 대한 동의, 관련발생비용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고발생시 당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9. 중요요소에 대한 이해

(1) 보험기간 (Period of Insurance)

보험기간은 통상 1 년을 기준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1 년 이내로 보험기간을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단기요율 적용으로 인하여 연간단위로 가입시의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습니다.

보험기간 중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 의한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환급하며, 보험사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보험료를 지급합니다.

(2)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

보상한도액은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한도액이며, 사고발생시 배상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보상한도액 설정시 발생가능한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몇회라도 복원되므로 추가보험료 납입은 없습니다.

(3) 공제금액 (Deductible)

공제금액은 하나의 사고당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잦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배상토록 하여 잦은 손해까지도 보험사에서 직접 개입하여 사업비의 과대발생

및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없앴으로써 보험료의 할인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공제금액은 피보험자의 손실방지를 위한 노력이 위험관리상 중요한 점에 비추어 반드시 일정금액을 설정합니다.

공제금액은 피보험자의 능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로 설정하며, 특히 예견가능하며 잦은 손해규모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업무처리 흐름

화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의 파악

계약자가 작성한 설문서를 바탕으로 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을 파악함

로 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항과 피보험으로써 보험가입의 필요성 판단

(2) 보험료 산출

계약자의 매출액, 보상한도액, 공산출(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하시어 폐사에 통보하여 주셔야

제금액을 파악하여 최적의 보험료는 반드시 설문서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3) 가입의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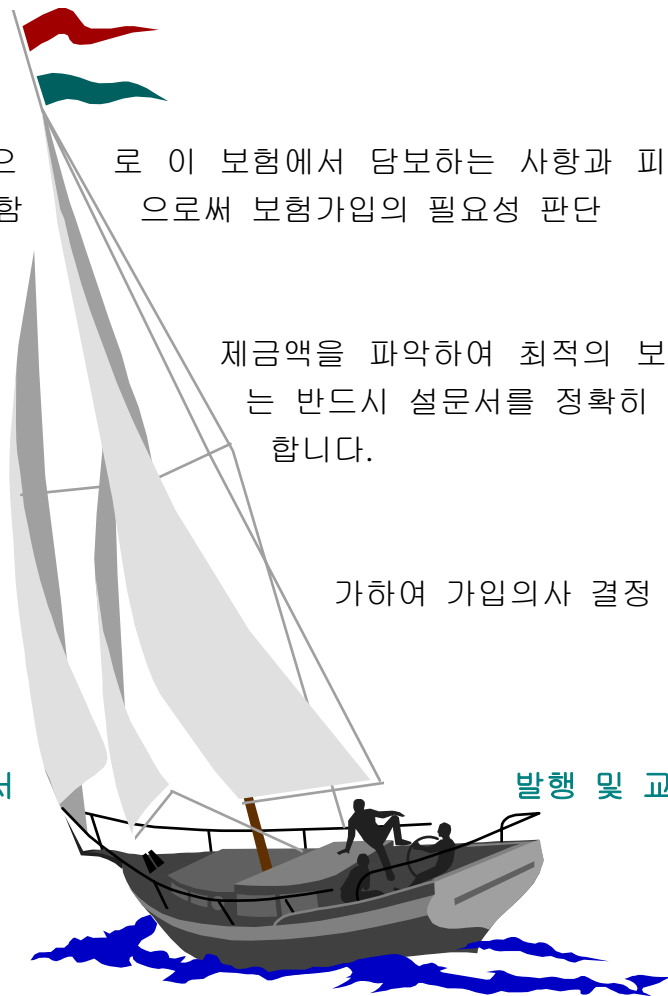
산출된 보험료와 보유위험을 평

가하여 가입의사 결정

(4)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납부

(5) 보험증권 및 보험가입증명서

발행 및 교부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화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본사 기업보험부 Tel(02 3705 9731 및 02 3705 9850)나 가까운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십시오.
 - 금융감독원 인터넷 주소 www.fss.or.kr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휴대폰 02-1332)

☞ Chubb 보험그룹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지점
주소 : 서울 중구 무교동 45 번지 코오롱빌딩 8 층(우 : 100-772)
대표전화 : 02 3705 9700. 팩스 : 02 755 6278